

# 대만(Taiwan)

##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50년
- 현행법 : 1958년(노동보험), 1960년 시행; 1993년(근로기준법); 2004년(노동연금), 2005년 시행; 2007년(국민연금법), 2008년 시행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강제개인계좌 제도 및 사회부조제도
- ※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의 정액급여와 노동보험제도의 소득비례급여로 구성됨
  - 국민연금제도는 다른 공적연금제도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대상을 위해 2008년에 도입됨
- ※ 2005년에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계좌제도(노동연금기금)이 사용자가 후원하는 이전 개인계좌 노동연금제도를 대체함. 새로운 제도는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들과 2005년 7월 1일 이후 사용자가 변경된 사람들에게는 강제적이며, 2005년 이전부터 근로하던 근로자는 임의적임. 2010년 이전에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경우 이전 제도 유지함. 변경한 경우 이전제도에 의해 발생된 권리는 새로운 제도로 이전됨

## 3 적용대상

- 사회보험제도
  - 국민연금제도 : 다른 공적연금제도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25~65세의 대만 국민
  - 노동보험제도
    - 당연적용: 근로자 5인 이상인 산업, 상업, 광업 사업장 및 대형농장의 15 ~ 60세 사이의 근로자; 임금을 받는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 어민; 직장조합원(Occupational Union)인 자영자
    - 임의적용 : 직장조합원(Occupational Union)이 아닌 자영자; 5인 미만인 산업, 상업, 광업 사업장 및 대형 농장의 사업장의 근로자;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는 특정 자영자;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비자발적 실업자
    - 특별제도 : 공무원, 농민, 공기업 근로자(사무직) 및 사립학교직원
- 의무개인계좌
  - 2005년 7월 1일 이후로 노동시장에 진입했거나 사용자가 변경된 대만 국적의 근로자;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등 외국으로부터 온 근로하고 있는 배우자,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특정 외국 국적의 대만 영주권자
    - 임의적용 : 자영자,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특정 근로자
    - 특별제도 : 사립학교직원

- 사회부조제도 : 사회보험(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대만 국민

## 4 재원조달

### ○ 가입자

- 사회보험(국민연금제도)
  - 월 보험금액의 5.1%
  - 장애인 또는 저소득 가입자는 장애등급 혹은 총 가족소득에 따라 월 보험금액의 0%, 2.55%, 3.825%를 납부함
  - 월 보험금액 : NT\$18,282
  - 가입자의 보험료는 현금출산급여의 재원으로도 조달됨
- 사회보험(노동보험제도)
  - 총 월 가입소득의 1.9%(2019~2027년까지 점차적으로 2.4%로 상향)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하한액 : NT\$22,000(2019년에는 NT\$23,100)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상한액 : NT\$45,800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은 최저임금변동에 따라 조정
  - 가입자의 보험료는 현금질병급여 및 출산급여의 재원으로도 조달됨
- 의무개인계좌
  - 월 가입소득의 최대 6%까지 임의 납부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하한 : NT\$1,500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상한 : NT\$150,000
- 사회부조제도 : 없음

### ○ 자영자

- 사회보험(국민연금제도)
  - 월 보험금액의 5.1%
  - 장애인 또는 저소득 가입자는 장애등급 또는 총 가족소득에 따라 월 보험금액의 0%, 2.55%, 3.825%를 납부함
  - 월 보험금액 : NT\$18,282
  - 자영자의 보험료는 현금출산급여의 재원으로도 조달됨
- 사회보험(노동보험제도)
  - 총 월 소득의 5.7%(2019~2027년까지 점차적으로 7.2%로 상향)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하한 : NT\$22,000(2019년에는 NT\$23,100)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상한 : NT\$45,800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은 최저임금변동에 따라 조정
  - 자영자의 보험료는 현금질병급여 및 출산급여의 재원으로도 조달됨
- 의무개인계좌
  - 월 가입소득의 최대 6%까지 임의 납부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하한 : NT\$1,500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상한 : NT\$150,000

- 사회부조제도 : 없음

○ 사용자

- 사회보험(국민연금제도) : 없음
- 사회보험(노동보험제도)
  - 월 가입임금총액의 6.65%(2019~2027년까지 점차적으로 8.4%로 상향)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하한 : NT\$22,000(2019년에는 NT\$23,100)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상한 : NT\$45,800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은 최저임금변동에 따라 조정
  - 사용자의 보험료는 현금질병급여 및 출산급여의 재원으로 조달됨
- 의무개인계좌
  - 월 가입소득의 최소 6%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하한 : NT\$1,500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상한 : NT\$150,000
- 사회부조제도 : 없음

○ 정 부

- 사회보험(국민연금제도)
  - 월 보험금액의 3.4%
  - 장애 혹은 저소득 가입자는 장애등급 또는 총 가족소득에 따라 월 보험금액의 4.675%, 5.95%, 혹은 8.5%를 납부함
  - 월 보험금액 : NT\$18,282
  - 정부의 보험료는 출산급여의 재원으로 조달됨
- 사회보험(노동보험제도)
  - 근로자 가입소득의 0.95%(2019~2027년까지 점차적으로 1.2%로 상향), 자영자 소득의 3.8%(2019~2027년까지 점차적으로 4.8%로 상향), 관리비용, 사용자로서 납부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하한은 NT\$22,000 (2019년에는 NT\$23,100임)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상한은 NT\$45,800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은 최저임금변동에 따라 조정됨
  - 정부의 보험료는 현금질병급여 및 출산급여의 재원으로 조달됨
- 의무개인계좌 : 없음
- 사회부조제도 : 총 비용 부담

---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 노령급여

- 노령연금(국민연금제도, 사회보험) :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65세인 자
- 노령 노동연금(노동보험제도, 사회보험)
  - 최소 1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61세 도달자(수급연령은 2년마다 1년씩 증가하여 2026년까지 점차적으로 65세로 상향)

- 고용활동 및 가입이 정지되어있어야 함
- 조기연금 : 56세 도달자(2년마다 1년씩 증가하여 2026년까지 점차적으로 60세로 상향)
- 연기연금 : 66세(2년마다 1년씩 증가하여 2026년까지 점차적으로 70세로 상향)까지 연기가 가능
- 일시적 노령급여 :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는 노동보험 노령연금 대신에 일시적 노령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수급자격은 최소 1년의 가입기간이 있는 60세 남성 혹은 55세 여성, 최소 15년의 가입기간을 가진 55세 남성, 최소 25년의 가입기간을 가진 50세,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서 최소 25년의 가입기간을 가진 연령무관인 자여야 함
- 노령노동청산금(노동보험제도, 사회보험)
  - 15년 미만의 가입기간이 있는 61세 도달자(2년마다 1년씩 증가하여 2026년까지 점차적으로 65세로 상향됨)
- 노령연금(노동연금기금, 의무개인계좌) : 15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60세 도달자
- 노령청산금(노동연금기금, 의무개인계좌) : 15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60세 도달자
- 노령기초보장(사회부조제도)
  - 2018년 기준, 65세 이상이고 최근 3년 간 각 해마다 최소 183일 동안 대만 거주자여야 함

○ 장애급여

- 장애연금(국민연금제도, 사회보험)
  -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및 영구적인 근로불능상태로 판단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국이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 및 근로불능을 판단함
- 장애노동연금(노동보험제도, 사회보험)
  -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및 영구적인 근로불능상태로 판단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국이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 및 근로불능을 판단함
  - 피부양자 보조금 : 55세 이상인 피부양배우자(장애 혹은 자녀가 있다면 연령제한 없음) 또는 가입자와 최소 1년의 결혼기간이 있고 특정 제한 이하의 월수입이 있는 45~54세의 피부양배우자, 18세 미만(학생은 25세, 장애아동은 연령제한 없음)의 피부양자녀에게 지급
  - 일시적 장애급여 :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는 노동보험 장애연금 대신에 일시금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국이 지정한 병원에서 영구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함
- 장애기초보장(사회부조) : 중증 혹은 고도중증 장애 및 영구 근로불능으로 판단되어야 함; 지난 3년간 각 해마다 최소 183일 동안 대만 거주자였어야 하며 다른 노령, 장애, 유족 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유족급여

- 유족연금(국민연금제도, 사회보험)
  - 사망자가 사망 당시 가입상태로 근로하고 있었거나 노령 혹은 장애연금 사회보험(국민연금제도)을 수급하거나 수급할 권리가 있는 자여야 함
  - 수급가능유족 : 사망자와 최소 1년의 결혼기간이 있는 55세 이상의 미망인(홀아비); 사망자와 최소 1년의 결혼기간이 있고 월 보험금액 이하의 월 수입을 가진 45~54세 미망인(홀아비);

20세 미만의 자녀(전업학생이고 월 보험금액 미만의 월 수입인 경우 25세; 영구근로불능 상태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이하의 자녀; 월 보험금액 이하의 월 소득을 가진 55세 이상의 부모; 월 보험금액 이하의 월 소득을 가진 55세 이상의 조부모; 피부양손자녀; 피부양 형제자매 순임

- 월 보험금액 : NT\$18,282
- 미망인(홀아비)의 연금은 재혼 시 중단됨
- 장제비(국민연금제도, 사회보험) : 가입자의 장례식을 지불한 자에게 지급됨
- 유족근로연금(노동보험제도, 사회보험) : 사망자가 사망 시 노령 노동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할 권리가 있었던 경우 또는 최소 15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있으나 노동보험 노령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지급
  - 수급대상유족은 미망인(홀아비), 자녀, 부모, 조부모, 피부양손자녀, 피부양형제자매 순임
  - 일시적 유족급여 :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노동보험 유족연금 대신에 일시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
- 장제비(노동보험제도, 사회보험) : 가입자의 장례식을 지불한 자에게 지급되거나, 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시 가입자에게 지급됨
- 유족연금(노동연금기금, 의무개인계좌)
  - 가입자 사망 시 미망인(홀아비) 혹은 자녀에게 지급
  - 미망인(홀아비) 또는 자녀가 없을 시, 우선순위대로의 수급자격유족은 부모,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임

##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 노령급여

- 노령연금(국민연금제도, 사회보험)
  - 월 연금액은 <월 보험금액의 0.65% × 가입기간 연수 + NT\$3,628> 또는 <월 보험금액의 1.3% × 가입기간 연도 수> 중 더 큰 액수 지급
  - 월 보험금액 : NT\$18,282
  - 연금액 조정 : 월 보험금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
- 노령노동연금(노동보험제도, 사회보험)
  - 월 연금액은 <가입기간 중 소득이 높았던 60개월 기간에 대한 가입자의 월 평균가입소득의 0.775%에 가입기간 연수 NT\$3,000> 또는 <가입기간 중 소득이 높았던 60개월 기간에 대한 가입자의 월 평균가입소득의 1.55% × 가입기간 연도 수> 중 더 큰 액수 지급
  - 조기연금 : 일반 퇴직연령 전 조기 수급하는 1년당 4%씩 감액.
  - 연기연금 : 퇴직을 연기하는 1년당 4%씩 연금액 증액.
  - 일시적 노령급여 : 퇴직 전 36개월 간의 가입자의 월 평균가입소득이 첫 15년간 매년 납부한 것에 대해 1개월치, 15년을 초과하여 매년 납부한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2개월치씩 일시금으로 지급됨
  - 일시적 노령급여의 최대 금액은 가입자가 원래 받을 권리가 있었던 노동보험 노령연금의 45배(가입자가 60세 넘어서도 계속 근로를 했다면 50배)임

- 노령노동청산금(노동보험제도, 사회보험)
  - 가입기간 1년마다 최고 가입소득 60개월 기간에 대한 가입자의 월 평균 가입소득 1개월치를 일시금으로 지급
- 노령연금(노령연금기금, 의무개인계좌)
  - 청구 당시 계좌 잔고와 종신연금 기대수명테이블에 기반한 평균 기대수명을 토대로 월 연금액 지급
  - 노동연금기금 노령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는 예금주는 대신 노동연금기금 노령보조금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노령청산금(노동연금기금, 의무개인계좌) : 계좌 잔고에 근거하여 일시금 지급
- 노령기초보장(사회부조제도) : 월 NT\$3,628 지급

○ 영구장애급여

- 장애연금(국민연금제도, 사회보험)
  - 월 보험금액의 1.3% 에 가입기간 연수를 곱한 금액 지급
  - 월 보험금액 : NT\$18,282
  - 최소 월 장애연금 : NT\$4,872
  - 급여 조정 : 월 보험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조정
- 장애노동연금(노동보험제도, 사회보험)
  - 가입기간 중 최고 가입소득 60개월 기간에 대한 가입자의 월 평균가입소득의 1.55%에 가입기간 연수를 곱한 금액 지급
  - 피부양자 보조금 : 장애연금의 25%가 수급자격이 있는 각 피부양자에게 최대 50% 까지 지급됨
  - 최소 월 장애연금 : NT\$4,000
  - 일시적 장애급여 : 가입자의 결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 발생 전 6개월 중 30~1,200일까지의 평균 가입소득에 대한 일시금이 지급됨
- 장애기초보장(사회부조제도) : 월 NT\$4,872 지급

○ 유족급여

- 유족연금(국민연금제도, 사회보험)
  - 가입자 사망 시 가입자의 월 보험금액의 1.3%에 가입기간 연수를 곱한 금액 지급; 노령 혹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노령 혹은 장애연금의 50%를 지급
  - 월 보험금액 : NT\$18,282
  - 최소 월 유족연금 : NT\$3,628
  - 유족들은 하나의 유족연금만 지급받을 수 있음. 한 명 이상의 수급대상유족이 있다면, 최대 2명까지 각 추가된 유족에게 유족연금의 25%씩 지급
- 장제비(국민연금제도, 사회보험)
  - 월 보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
  - 월 보험금액 : NT\$18,282
  - 급여 조정 : 월 보험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조정

- 유족노동연금(노동보험제도, 사회보험)
  - 가입 중 사망 시 사망자의 가입기간 중 최고 가입소득 60개월 기간에 대한 월 평균 가입소득의 1.55%에 가입기간 연수 곱한 금액을 지급; 노령 혹은 장애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사망자가 수급하거나 수급할 권리가 있었던 노동보험 노령 혹은 장애연금의 25%는(최대 50%까지) 각 수급대상유족에게 지급됨
  - 최소 월 유족연금 : NT\$3,000
  - 일시적 유족급여 : 사망 전 6개월 간 월 평균가입소득에 대해 사망자가 최소 2년의 납부기간이 있었다면 30개월 치, 1~2년의 납부기간이 있었다면 20개월 치, 1년 이하의 납부기간이 있었다면 10개월 치의 일시금을 지급
- 장제비(노동보험제도, 사회보험)
  - 가입자 사망 시, 사망 전 6개월 간 평균가입소득의 5개월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됨; 만약 수급대상유족이 없다면, 사망 전 6개월 간 월 평균가입소득의 10개월분이 일시금으로 지급
  - 가입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시, 가입자의 최근 6개월 간 월 평균가입소득의 3개월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가입자의 12세 이상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의 최근 6개월 간 월 평균가입소득의 2.5개월분이 일시금으로, 12세 미만의 자녀 사망한 경우 1.5개월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됨
- 유족연금(노동연금기금, 의무개인계좌)
  - 계좌 잔액 토대로 일시금이 지급됨. 사망자가 노령연금(의무개인계좌)을 사망 당시에 수급하였으며, 예상 평균 기대수명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가입자의 계좌 잔액이 일시금으로 지급

## 7 관리운영기관

- 노동위원회의 노동보험과 (Department of Labor Insurance of the Ministry of Labor)
  - <https://www.mol.gov.tw>
  - 전반적 감독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험과 (Department of Social Insur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https://www.mohw.gov.tw>
  - 국민연금제도 운영
- 노동보험국 (Bureau of Labor Insurance)
  - <https://www.bli.gov.tw>
  -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지급

<2018년 ISSA 자료>